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7
----------	------

제출년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 가. 차량 부제 운행방식이 “승용차 요일제”로 단일화 함에 따라 각 부제별로 차등 적용하던 주차요금 징수방식 및 감면비율을 단일화하고
- 나. 이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세분화 되어 있는 차량 부제 운행방식을 “승용차 요일제”로 단일화 함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감면비율을 50%로 단일화함.(안 제4조의2제3호)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제4조의2제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생략)</p> <p>1. ~ 2. (생략)</p> <p>3. <u>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자동차 외부에 부제 참여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u></p> <p>가. <u>10부제인 경우 : 20퍼센트 감면</u></p> <p>나. <u>5부제 · 요일제인 경우 : 30퍼센트 감면</u></p> <p>다. <u>2부제인 경우 : 40퍼센트 감면</u></p>	<p>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p>□ 주차장법</p> <p>○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p> <p>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p> <p>○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주차요금 감면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또는 감소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생략

3. 미첨부 사유

- 차량 부제 운행방식이 「승용차 요일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세분화 되어 있는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통합된 「승용차 요일제」로 전환함은 물론, 민간 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상향조정(30% → 50%)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차요금 감면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부분적인 세외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차장 이용이 늘어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함.

4. 작성자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장 김동훈